

토지 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하우배수지 증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하며,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보상계획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30.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하우배수지 증설사업
- 나. 사업개요 : 배수지 증설 V=1,000m³ (기존 V=1,000m³, 금회증설 V=1,000m³)
- 다. 사업시행자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라. 사업구간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일원

2. 토지출입의 내용

- 가. 출입목적 : 토지 측량과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 다.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계획

가. 편입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1) 편입조서의 내용: 붙임 '토지조서' 참조

※ 연천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1. 07. 30. ~ 2021. 08. 14.(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32)

4) 이의신청: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 '의견서' 를 작성,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방법 : 일괄보상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개별 보상금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2)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계좌이체)→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신청→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의재결 신청(재결 불복 시 30일 이내)→이의재결→행정소송

※ 제출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 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 가. 토지 및 지장물건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나.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협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_하우배수지

연번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합계					4,958	2,902	971	3,873			
1	신규	미산면 백석리	산63-1	임	992	-	992	992	한*규	서울시 중구 신당동 309-2**	
2	신규	미산면 백석리	산63-2	임	991	-	835	835	한*규	서울시 중구 신당동 309-2**	
3	변경	미산면 백석리	산64	임	2,902	2,902	- 892	2,010	연천군	-	
4	변경	미산면 백석리	산64-1	임	73	-	36	36	국(산림청)	-	